

#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52호
----------	--------

제출년월일 2023. 1. .  
제출자 도로관리과장

## 1. 제안(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
- 공익 목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공작물에 대하여 근거 마련을 위함.

## 2. 주요내용

가. 안 제명 :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나. 안 제3조(신설)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 횡단보도 그늘막
- 3) 김포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2. 14. ~ 2023. 1. 3.(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 협의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 부서

가) 중앙부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나) 경 기 도 : 도로안전과

##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및”을 “「도로법」,”으로,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용료와 변상금,과태료”를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를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법 제72조”를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로 한다.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특정부분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를 말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횡단보도 그늘막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9조제2항” 을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으로 한다.

제5조 중 “제3조” 를 “제4조” 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17조” 를 “법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제31조” 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으로,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로,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시설 중 제3조 개정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제3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소관 실·과·소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도로관리과장 김 영 운
	팀 장 직위·성명	도로행정팀장 채 광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서기 배명철(☎4564)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용료와 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li> <li>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김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 「도로법」, -----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김포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 필요한 -----.</p>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특정부분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행하는 허가를 말한다.</li> <li>2. -----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li> <li>3. -----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li> </ol>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

-----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  
-----.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횡단보도 그늘막
3.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  
-----.

제5조(점용료의 조정) -----  
-----  
-- 제4조-----  
-----  
-----.

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  
액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  
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권한위임) ① (생 략)

제12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  
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  
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  
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 법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0조, 제31조-----

-----.

제11조(권한위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이의신청) -----  
----- 「지  
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따른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5. 8. 11., 2017. 12. 5., 2021. 1. 5.>

1. 전봇대·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 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4. 1. 14., 2017. 11. 28.>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을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을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 6. 8.]

##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점용료와 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21.7.2.>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18.7.25>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7.25>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21.7.2.>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제11조(권한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9.2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